

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(제8조제2항 관련)

구 분	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	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
1. 시설	가. 진료실 나.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채취실	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및 전문인력
2. 장비	가. 초음파기기 나. 현미경 다. 정액검사장비 라. 원심분리기 등 정자분리 장비	
3. 전문인력	가.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 나.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	